

고향세와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한 실무적 검토

일시 : 2023. 2. 16.(목) 14: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개회식

개회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주제발표

좌 장 이종교 교수 (연세대)

발제 1 구광희 세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2 박상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

지정토론

토론자 김홍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현아 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지사항] * 포럼 영상 촬영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 탑재 예정
*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세무포럼 게재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안내
14:00-14:05	(개회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14:05-15:05	좌 장 이종교 교수 (연세대) 주 제 고향세와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한 실무적 검토 ▣ 제1주제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구광회 세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 제2주제 :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 / 박상수 선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5:05-15:35	지 정 토 론 김홍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현아 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35-15:50	자 유 토 론

목 차

◎ 주 제 : 고향세와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한 실무적 검토

■ 제1주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	
구광희 세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 제2주제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 29	
박상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문 김홍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45	
토론문 김현아 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6	

제 1 주 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주제 발표자 | 구 광 회 세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제 1 주 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구광희 세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일 시 : 2023. 02. 16.

발 표 자 : 구광희 대구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박사)

CONTENTS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01
개요

02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

03
고향세 제도 비교

04
제도의 기대 효과

05
실증 분석

06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07
결론

01 개요

1.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목적 및 의의

가. 도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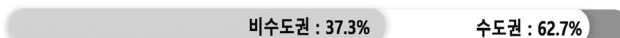
-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50%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활력저하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애郷심을 갖고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진행 상황을 완화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수도권 인구 집중 추이

국가통계포털(2020), 2020년 12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국가통계포털(2020), 210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예상치



0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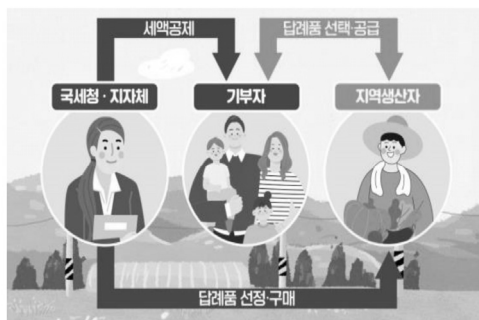
2

1.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목적 및 의의

나. 고향사랑기부제 의의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거주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01 개요

3

1.2. 고향사랑기부제 성격 및 추진경과

가. 고향세의 성격

고향세는 조세인가 기부금 인가?

조 세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기부금

고향세는 고향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기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1.2. 고향사랑기부제 성격 및 추진경과

- 일명 '고향세'로 고향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 기부를 통해 '고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지역'을 살린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추진 경과



출처 : 행정안전부(2023.01)

1.3.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가. 주요 내용



- | | | | |
|----------------------------------|--|----------------------------------|----------------|
| ▪ 기부주체 : 개인(법인 X) | ▪ 한도 : 기부금 30% 범위 (최대 150만원)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 기부액의 상한 : 연간 500만원
(지자체 합산) | ▪ 취약계층 지원 |
| ▪ 기부대상 :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자체 | ▪ 답례품 선택 : 기부자 직접
선택 가능 | ▪ 접수 : 금융기관 납부, 전자이체 등 | ▪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

01

개요

6

1.3.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나.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조특법 58조 1항)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지방조례) : 기부금액의 30% 한도(150만원)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시 혜택 (세금 + 답례품)

기부액	계	세액공제	답례품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100,000원	30,000원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248,500원	300,000원
500만원 기부시	2,408,500원	908,500원	1,500,000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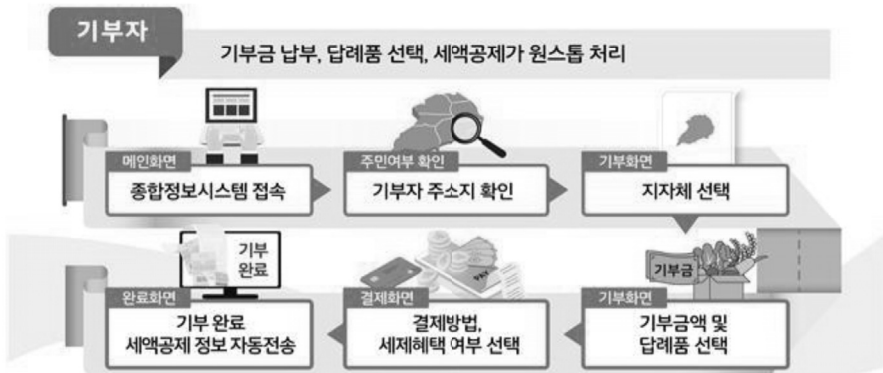
개요

7

1.3.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온라인 사이트 : 고향사랑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
- 원스톱 서비스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선택과 배송 - 자동세액공제 처리
- 기부 절차 흐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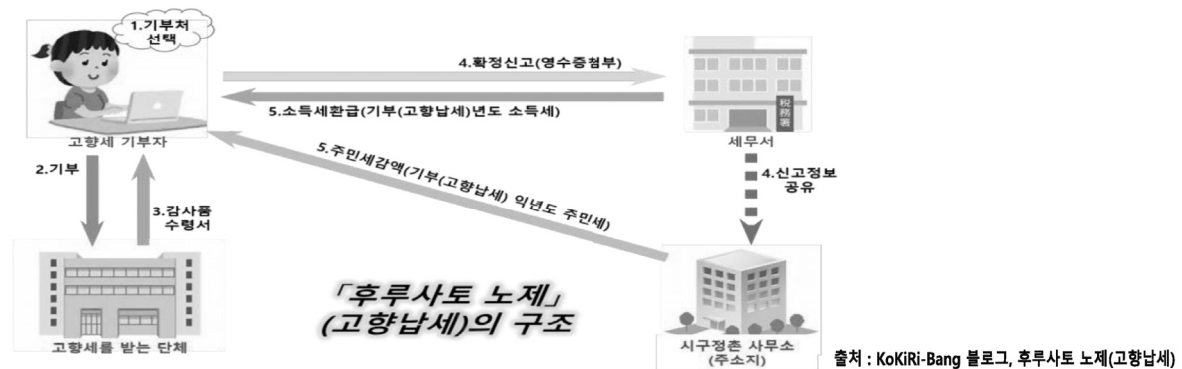
2.1.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의 개요

- 납세자가 임의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로 기부하면 2천엔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써 2008년도에 처음 시행
- 기부자가 기부할 지자체, 기부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스스로 선택
- 각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 2016년도에 '기업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여 법인도 10만엔 이상 기부시 세금공제 혜택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2.2. 고향납세 신고 방식

- 2015년 이전에는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을 신고 공제하는 방식으로 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하였음
- 2015년 이후에는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으로 급여소득자의 신고절차 편의증진으로 고향납세제도 활성화에 기여



0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10

2.3. 고향납세 세액 공제방식

가. 개인 고향납세 세액공제 구조

개인 부담	세 금 공 제 내 역		
적용 하한 액	소득세	주민세 (기본분)	주민세 (특례분)
2,000엔	(고향납세금액 - 2천엔) X 소득세율	(고향납세금액 - 2천엔) X 주민세율(10%)	(고향납세금액 - 2천엔) X (100%-10%-소득세율)

나. 법인 고향납세 세액공제 구조

세 금 공 제 내 역			기업 부담
손금산입	세액공제	법인 주민세	
약 30% (국세+지방세)	법인사업세의 10%	20%	약 40%

0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11

2.4. 고향납세 추진 실적

가. 고향세 도입시

- 2008년 81억엔에서 2021년 8,302억엔으로 102배 증가

<표> 연도별 고향납세 기부금액 및 건수

건수 : 1만 건 / 금액 : 억엔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건수	5.4	5.6	8.0	10.1	12.2	43	191	726	1,271	1,730	2,322	2,334	3,489	4,447
기부액	81	77	102	121	104	145	388	1,653	2,844	3,653	5,127	4,875	6,725	8,302

나. 일본국민 참여 현황

-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 진행으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
- 젊은층의 참여율이 증가 추세이며, 지역특산물이 답례품으로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고취

고향세 제도의 비교

3.1. 한국과 일본의 고향세 제도

한국과 일본 고향세 제도비교		
구분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고향납세제도, 후루사토)
관련 법령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세법 개정법률
제도의 방식	기부금 제도	기부금 + 세액공제 방식 혼합
시행 시기	2023년 1월	2008년 5월
기부 자격	개인 (법인 불가)	개인, 법인(2016년) 모두 가능
기부대상 지역	거주지 외 모든 지자체	모든 지자체(거주 지자체 가능)
자기 부담액	개인 부담비율 높음	2,000엔, 추가 개인부담 없음
재정 분권	중앙 -> 지방(국세 91%, 지방세 9%)	지방 -> 지방재원, 지방부담 비율 높음
기부 한도액	연간 5백만원	없음
세금혜택	10만원 까지 :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 : 16.5% 공제	소득세 : 소득공제(2,000엔 초과분) 지방소득세 : 세액공제(10%, 특례 20%)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기부금의 30%이내(권고), 농축산물 등
수혜자	소액기부자 유리 (10만원 이하)	고소득자 유리
관리 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라쿠텐 등 납세사이트(민간운영)

고향세 제도의 비교

3.2. 재정부담 구조

<사례> 종합소득금액 1억원(1천만엔)인 개인이 1백만원(10만엔)을 고향세로 기부시

구분	재정이전 효과	한국(고향사랑기부제)	일본(고향납세제도)
국가	국가 -> 지방	22.6%	32.3%
지자체	지방 -> 지방	2.3%	65.7%
기부자	개인 -> 지방	75.1%	2.0%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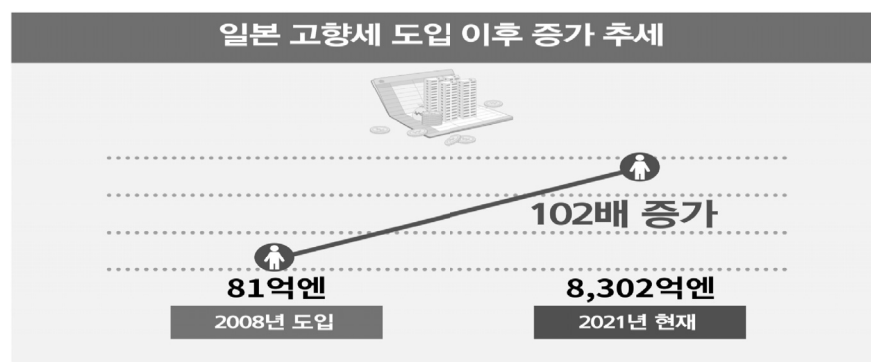
- 한국의 고향납세제도는 개인 기부자가 가장 많은 재정부담을 하고 있음 (민간 -> 공공)
- 한국의 지자체는 고향세 부담을 가장 적게 지고 있으나 일본은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음

03

고향세 제도의 비교

14

3.3. 일본 고향세제도의 정착 배경과 시사점



<증가 요인>

- 답례품 제공이 고향세 유치수단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기부자 70%)
- 고향납세 환경의 정비로 기부 활성화
 - 2012년부터 기부금 자기 부담액 인하, 2015년 원스톱특례제도 도입으로 신고절차 간소화

04

제도의 기대 효과

15

4.1.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

-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음
- 고향세 시행으로 고향에 기부하면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됨
- 기부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함으로 소액기부자 증가로 기부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으로의 기부주체 확대 등 다양한 사업 구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제도의 기대 효과

4.2.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답례품 개발

가. 우리나라 답례품

- 기부시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을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답례품 제공이 기부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답례품으로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가장 선호하며, 지역상품권도 희망하고 있음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9조(답례품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1.01)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한다

제도의 기대 효과

4.2.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답례품 개발

나. 일본의 답례품

-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자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
- 일본 고향세의 성공적 요인으로는 '답례품의 충실 제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답례품 제공 품목은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일본 '고향납세' 3대 기본 이념

-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납세의 중요성을 각인
- 지역(고향)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고향)발전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 도모 및 지역 정체성 확립

04

제도의 기대 효과

18

4.2.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답례품 개발

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기부자의 선호에 맞는 답례품 선정으로 기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 답례품 선정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이 큰
답례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층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여 지역 인구감소 예방
-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다수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답례품목 선정과 가격을 결정
하는 것이 기부 모집에 유리



출처 : 고향사랑e음 지자체별 답례품

04

제도의 기대 효과

19

4.3. 고향사랑 기부금 전망

- 시행초기라 기부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움
 -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65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추정
 - 제도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홍보 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질 경우 기부금 규모 증가 전망

한국지방세연구원(2022.12.30)

- 대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650억 ~ 1천억원 예상
- 제도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2천~3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5.1. 문항 설계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설계
- 설문 항목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 기부 의사 및 금액, 기부 혜택, 기부금 활용 분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계

5.2. 설문조사 내용

- 대상 :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700명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 방법 : 2023.01.09 ~ 01.13까지 팩스 및 메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262명(28%)이 응답

Date. 2023. 1.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시간은 약 2분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III. 고향사랑기부금

(1) 기부동기 ① 애향심 ② 세금혜택 ③ 답례품 ④ 자긍심

(2) 기부참여의사 ① 매 년 ② 가끔 ③ 없음

(3) 기부희망금액 ① 10만원 ② 30만원이하 ③ 50만원이하 ④ 1백만원이하 ⑤ 5백만원이하

IV. 현행 기부시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1) 세액공제(16.5%) ① 많음 ② 적정 ③ 부족 ④ 폐지

(2) 답례품 (30%) ① 많음 ② 적정 ③ 부족 ④ 폐지

(3) 희망 답례품 ① 농축수산물 ② 생활용품 ③ 문화시설이용권 ④ 지역상품권

V.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1. 의료, 보건, 복지 ① 찬 성 ② 반대

2. 교육, 인재육성 ① 찬 성 ② 반대

3. 취약계층, 아동, 육아 지원 ① 찬 성 ② 반대

4. 스포츠, 문화, 예술 진흥 ① 찬 성 ② 반대

5. 환경, 위생, 자연재해 지원 ① 찬 성 ② 반대

6. 지역 산업진흥 ① 찬 성 ② 반대

7. 관광, 정주 촉진 ① 찬 성 ② 반대

8. 기부금 사용용도 선택 ① 찬 성 ② 반대

VI. 제도개선 사항

(1) 기부금 한도 인상 ① 찬 성 ② 반대

(2) 세금 공제를 인상 ① 찬 성 ② 반대

(3) 답례품환원율확대 ① 찬 성 ② 반대

(4) 거주지 기부제한 ① 찬 성 ② 반대

(5) 기부자 확대(법인추가) ① 찬 성 ② 반대

I. 기본사항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령별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3) 출생지 ① 수도권 ② 광역시 ③ 일반 ④ 군 이하

(4) 주소지 ① 수도권 ② 광역시 ③ 일반 ④ 군 이하

(5) 직 업 ① 사업자 ② 근로자 ③ 전문직 ④ 농어민

II.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① 잘 알고 있다 ② 약간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름

(2) 지역경제 활성화 ① 매우 도움 ② 약간 도움 ③ 도움 안됨

(3) 기부 희망지역 ① 고향 ② 타지역(수도권) ③ 타지역(비수도권)

05

실증 분석

22

5.3. 설문내용 분석결과

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인식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66%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다수가 고향에 기부를 희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나 기대치는 높지 않음

<표 1>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

구 분	비 율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① 잘안다(34%) ② 약간 안다(47%) ③ 모른다(19%)
지역경제 활성화	① 매우 도움(31%) ② 약간 도움(60%) ③ 도움 안됨(9%)
기부희망지역	① 고향(83%) ② 타지역(17%)

05

실증 분석

23

5.3. 설문내용 분석결과

나. 기부 의사 및 기부금액

- 기부동기는 애향심, 세금혜택, 자긍심 순이며, 답례품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음
- 계속 기부할 의사는 과반수에 미달되며, 기부금액은 10만원 수준임

<표 2> 기부동기 및 기부금액

구 분	비 율 (%)
기부 동기	① 애향심(69%) ② 세금 혜택(16%) ③ 자긍심(12%) ④ 답례품(3%)
기부 의사	① 매 년(42%) ② 가끔(54%) ③ 없음(4%)
기부 금액	① 10만원(52%) ② 30만원 이하(24%) ③ 30만원 이상(24%)

5.3. 설문내용 분석결과

다. 기부혜택의 적정성 및 희망 답례품

-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환원율은 현 제도가 적정한 수준임
- 답례품은 지역의 농수산물을 가장 선호함

<표 3> 기부혜택 및 답례품

구 분	비 율 (%)
세액 공제	① 적 정(71%) ② 부 족(19%) ③ 많 음(8%) ④ 폐 지(2%)
답례품 제공	① 적 정(76%) ② 많 음(11%) ③ 적 음(4%) ④ 폐 지(9%)
답례 품목	① 농수산물(61%) ② 지역상품권(23%) ③ 가공식품(10%) ④ 문화시설이용(6%)

5.3. 설문내용 분석결과

라. 기부금 활용 용도

- 기부금 활용 용도는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에 관심이 집중
-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정 할 수 있는 기부지정제 도입 고려

<표 4> 기부금 활용 분야

활용 분야	찬 성	반 대
취약 계층, 육아 지원	86%	14%
교육, 인재 육성	83%	17%
기부자 사용 용도 지정	52%	48%

05

실증 분석

26

5.3. 설문내용 분석결과

마. 현행 제도의 보완 및 개선할 사항

-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으로 기부대상 범위 확대
- 세액공제율 인상, 기부한도 증액, 거주지역 기부제한 폐지 찬성
- 답례품 제공 수준은 30% 이하가 적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답례품 선정의 필요성 제기

<표 5> 기부금제도 개선 사항

활용 분야	찬 성	반 대
기부자 법인 추가	80%	20%
세액공제율 인상	74%	26%
기부한도 증액	66%	34%
거주지 기부제한 폐지	59%	41%
답례품 확대	45%	55%

06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27

6.1. 기부금 모집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예방

- 기부금 모집 강요 등 지자체간 유치경쟁 과열 예방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 운영
- 불법 기부금 모집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강화
- 모범적 기부모금 활동 및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6.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

- 개별홍보 제한은 기부금 모집의 제약 요인이 되므로 규제 해제 등 홍보 방식의 자율화
- 애향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홍보활동 전개
- 출향인사 및 잠재적 기부 대상자 DB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생산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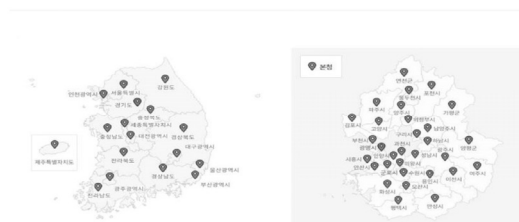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6.3. 기부모집 주체 및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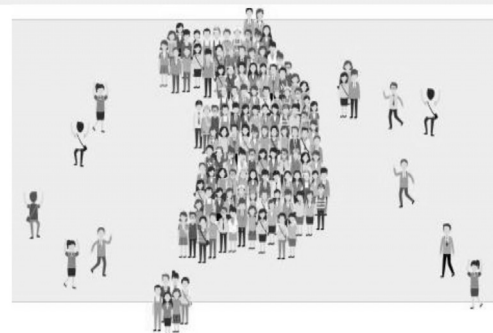
- 10만원 이하 소액기부 증가로 재정유입 효과 미흡, 기부 증대방안으로 '기업기부제' 도입 검토
-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지역 선택 할 수 있도록 거주지 포함 기부지역 확대
- 기부절차 간소화, 답례품 선정, 세액공제 운영 등 기부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기부 지자체 선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주선택



기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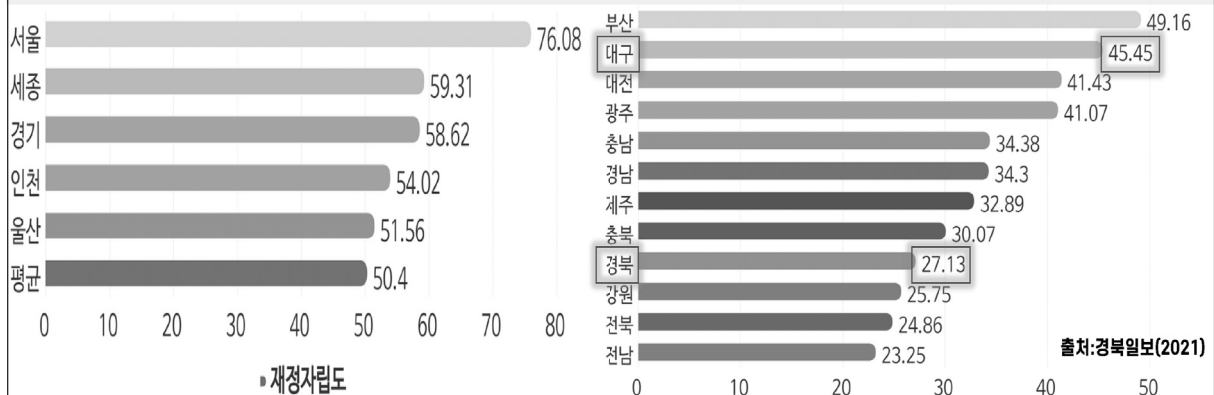
06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30

6.4. 기부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및 기부 상한선 인상

- 부분세액공제 방식으로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로 기부액 상한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재정자립도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06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31

6.5. 지역 특성에 맞는 답례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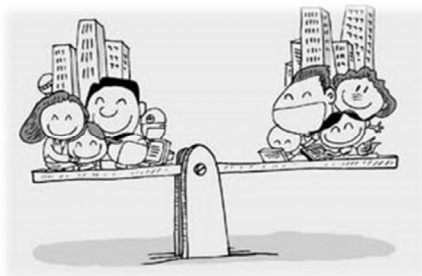
- 답례품 선정의 다양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과도한 경쟁방지 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독자적인 경영전략 마케팅, 품질보증, 포장, 배송 등 지원사업 공동 운영으로 경비절감
- 지역특성에 맞는 답례품 개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농, 귀촌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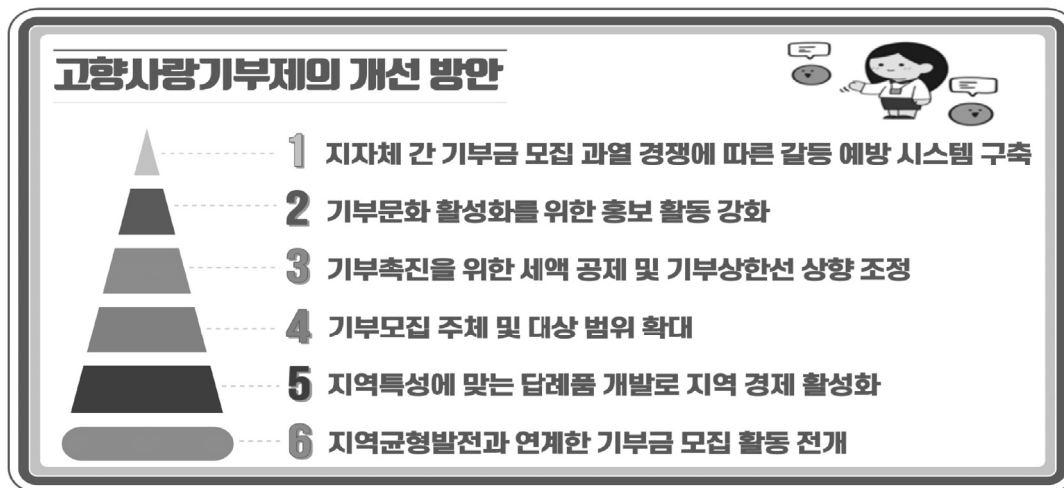
6.6.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기부금 모집

- 기금운용의 창의성과 투명성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지방세 세액공제에 따른 재정감소분 국고지원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고향 이주교류 촉진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전담 조직 설립 운영



결론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진행상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함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Thank you.

제 2 주 제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

| 주제 발표자 | 박 상 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제 2 주 제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됨.
 - 확정된 120대 국정과제는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가 추가된 것임.
-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는 출범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5개(4.27.)에서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7.26.)로 확정됨.
 - 지역균형발전 실천과제는 당초 76개(4.27.)에서 47개(7.26.)로 확정됨.

<그림 1>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22.4.2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2.07.26.)
(약속1) 지역주도 균형발전		(약속1)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약속2) 혁신성장 기반 강화		(약속2)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약속3)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약속3)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의 재도약과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 등에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함.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방분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음.
 -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3대 약속,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동시에 추진함.
-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요과제 중 하나로 민간 주도의 투자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적임.
 - 윤석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
 - 문재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존2 등 공공부문의 이전 및 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함.

□ 기회발전특구 개념과 특징

- 국정과제인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인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지정 및 운영함.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연스러운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목표로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2022.4.27.)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①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②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임.
 - 이와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꾀함.
-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

○ 정부가 2022년 9월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정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

-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함.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
- 이 경우 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 제도 대상지역, 지정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대상지역)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비수도권 지역
 - 既조성된 계획입지(국가·지방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별입지 모두 가능
- (면적상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과 기업집적 필요성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최대 면적 상한 설정(예: 100만 평)
 - 각 시·도는 면적 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 설정 가능(분할 지정)
 - 단, 앵커기업 투자 시 협력기업 동반 투자를 감안하여 특구 면적 제외 가능
- (투자업종) 원칙적으로 투자업종 제한이 없으나, 지자체가 유치 희망 업종 지정하여 우대 지원 가능
- (지정 절차) 특구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선정→부처협의를→특구 지정 단계로 진행
 - (기본계획 수립) 토지이용, 기반시설, 특화산업 육성, 입주기업 지원 등에 대해 앵커기업과 지자체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약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함.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계획수립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지자체 선정)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함.
- (부처 협의) 특구 기본계획의 타당성, 규제 특례, 지원 수단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 (특구 지정)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가칭)지방투자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는 목적, 투자 주체, 정책 수단, 추진방식 등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설정함.
 - 인구이동을 유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 국토의 인구가 일부 지역에 쏠림이 없이 골고루 퍼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음.
 - 인구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분산되는 환경을 조성함.
- 둘째,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의 주체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이며,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를 위해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함.
 - 투자 주체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이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시장친화형으로 제도를 설계함.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세후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함.
- 셋째, 사람이 골고루 퍼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는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세제 혜택, 교육시스템 지원, 규제 특례라는 3개의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함.
 - (세제 지원)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상속세, 취득세·재산세를 지원함
 - (규제 특례) 지자체장에게 규제 완화 권한을 위임하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며, 규제특례 6개 법률(산업융합촉진법, 연구개발특구법, 금융혁신법, 정보통신융합법, 스마트도시법, 규제자유특구)을 준용함
- 소비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을 수도권이 아닌 일정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개인과 법인에는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부여함.
 -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조세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의 역할
- 넷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다섯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관장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운영됨.
 - 정부가 2022년 9월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음.
 -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원제도

○ 특구 등 지정지구들은 활성화 목적 아래 「조특법」 및 「지특법」 중심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음.

- 「조특법」과 「지특법」은 각각 국세와 지방세 측면에서의 감면 등 세제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 특구 등에 관한 조세지원에 있어 주축이 되는 근거법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세지원을 추진 중으로 「조특법」 및 「지특법」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불가피한 만큼, 해당 법률이 포괄하고 있는 특구 등 지정지구에 관한 조세지원 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초석을 제공

○ 「조특법」 및 「지특법」상 특구 등에 관한 조세지원은 지정지구 내 입주한 기업 또는 그 안에서
의 추진 사업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삼음.

- 지원정책의 목적별로 해당 기업 및 사업에 대한 범주(업종,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가 한정되도록 규정한 것이 보편적 특징임.
 - 예 :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첨단기술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관광/문화/첨단기술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수출제조업/물류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문화/관광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보건의료기술산업) 등
- 「조특법」은 법인세, 소득세를 주된 세액감면 대상 세목으로, 「지특법」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액감면 대상 세목으로 설정함.
- 세액 감면 수준으로는 일정 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에 따라서 50~10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
- 내·외국인에 대해 동등한 조세지원을 바탕으로 하나, 특정 지정지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을 허용함.
 - 예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표 1>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구 등 조세지원 현황 (2022년 5월 기준)

조항	감면내용	감면세목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대상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감면사항 • 100%¹⁾ 또는 50%²⁾ 세액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 및 중소기업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감면사항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 50% 세액 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대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감면사항 • 100% 또는 50% 세액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감면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 지식서비스 산업 사업 등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사항 • 100% 또는 50% 세액 감면 감면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투자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감면사항 • 100% 또는 50% 세액 감면 감면대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한 기업 • 투자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사항 • 100% 또는 50% 세액 감면 감면대상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 보건의료기술사업, 식품산업 등 사업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감면사항 • 관세면제 감면대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관세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감면사항 • 관세면제 감면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한 기업 •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본재 물품	

주: 1) 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구 등 설정된 지역 내 입주한 기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정리함.

2) 100% 세액 감면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

3) 50% 세액 감면 : 그 다음해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내국 법인 및 공장의 전국에 걸친 고른 확산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조특법」 및 「지특법」에서 기업도시개발,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해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

- 기업(기관)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수도권 밖으로의 법인 본사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법인의 지방 이전 등
- 공장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의 중소기업 공장 이전, 공장의 지방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 등

○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유사성을 띠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조세지원은 아래와 같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은 특정 산업분야로 특화시킨 지정지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지정지구들 중 상대적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유사성을 가짐.
 - 기업도시개발구역 :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등으로 지원대상 산업이 광범위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조세지원 사항

- 근거 규정 : 「조특법」 제121조의17, 「지특법」 제75조2
- 도입목적 :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수혜자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창업·신설기업 및 사업시행자
- 수혜내용(국세) : 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인세·소득세 등을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수혜내용(지방세)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

○ 지방이전 기업에 관한 조세지원은 아래와 같음.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근거규정 : 「조특법」 제63조의2, 「지특법」 제79~80조
- 도입목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기업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수혜자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
- 수혜내용(국세) : ① 본사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지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② 본사·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수혜내용(지방세) : 과밀억제권역(산단 제외)에서 지방으로 본점·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세액감면

○ 조세지출예산서¹⁾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높지 않으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기준 지역균형발전 조세지출 규모는 3.2조 원이며, 전체 조세지출 중 지역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7% 수준에 불과함.
- 2023년 국세 감면액: 69조 3,155억원, 지역균형발전: 3조 2,481억원, 기업 이전: 4,589억원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은 2018년 5.97%에서 2023년 4.7%로 1.3%p 감소할 전망이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조세감면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분야 중 기업 이전에 해당하는 조세지원 비중은 약 14% 수준에 불과함.

1) 조세지출예산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3개 연도(직전, 해당, 다음연도)의 조세지출(지방세 제외) 실적 및 전망을 집계·분석하며, 조세지출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근거하여 규정함.

-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 중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경우 일정 부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조특법」 제60조, 제61조의 경우 법인세(양도차익)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은 크지 않음.
- 동법 제62조의 경우 또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제한된 대상에 한정됨으로써 조세지원 규모와 비중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지방이전 기업과 기업도시에 대한 국세 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	3	2	0	0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6,513	772	2,052	1,183	1,280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6,441	3,032	2,995	3,256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26	56	8	49	53
소계	6,543	7,272	5,094	4,227	4,589

*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재구성

□ 미국 기회특구 특징과 효과

○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는 저소득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낙후지역 및 저소득지역인 기회특구에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상업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 OZ)란 민간 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미연방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지역을 말함.

- ① 투자자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적격기회펀드(QOF)에 투자하며, ② 해당 펀드는 자산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내 사업(적격재산)에 투자하고, ③ 투자자는 투자를 지속하는 기간에 따라 적격기회펀드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이연(tax deferral) 및 공제와 적격기회펀드 투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음.

○ (기회특구 조세지원) 일정 기간을 투자한 투자자는 ① 기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② 적격기회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듦.

- 첫째, 기존 부동산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적격기회펀드에 재투자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적격기회펀드 투자를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종 과세시 기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여 투자한 양도소득에서 10%를 공제하고, 7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5%를 추가 공제(총 15% 공제)함.

- 둘째, 적격기회펀드가 기회특구 지역의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적격기회펀드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액면제 받음.

<표 3> 미국 기회특구 투자지속기간별 세제혜택

구분	투자개시년도	5년차	7년차	8년차	10년차
	2018년	2023년	2025년	2026년	2028년
기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적격기회펀드에 재투자한 소득에 대한 세금	적격기회펀드에 재투자(양도소득 실현 후 180일 이내)	양도소득 10% 공제	양도소득 15% 공제	2026.12.31.까지 당초 양도소득의 85%에 부과되는 세금 납부	-
적격기회펀드가 기회특구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	기회특구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유동화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기회특구 조세지원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역 기반의 조세지원 제도
 - 투자자가 저소득지역(기회특구)에 투자하는 행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 조세지원 대상은 투자자
 - 저소득지역의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제 지원
- 투자지역, 투자대상 선정 등에서 민간 중심
 - 기회특구에서 개발계획 수립 주체는 민간부문
 - 기회특구에서 투자 대상은 술집, 카지노 등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 외에는 매우 폭넓고 다양함
- 투자수익 보전 차원에서 상당한 세제혜택 부여
 - 기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기회특구 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래 양도소득세를 통해 지원
- 10년 이상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표 4>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미국 기회특구 조세지원내용 비교

구분	산업단지	기회특구
목적	산업 육성, 산업의 지방분산	저소득지역 투자 확대
개발계획 수립 주체	공공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민간부문 (개발 시행자)
조세 지원대상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적격기회펀드를 통해 저소득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
조세지원 요건	포지티브 요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네거티브 요건 (술집, 카지노 등에 대한 투자 제외, 개인, 법인 등 모든 투자자 가능)
지원 세목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 (긍정적 효과)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가 저소득지역의 투자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저소득지역의 투자확대 등을 위해서는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됨.

- 회계법인 Novogradac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적격기회펀드(QOF)의 총 투자규모는 488.6억 달러에 달함.
-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는 저소득지역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내부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기회특구 조세지원은 저소득 지역에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관련 의사결정과 활동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남.
 - 적격기회펀드 운영자들은 기회특구 조세지원은 인센티브가 없었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사업이나 지역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 기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 적격기회펀드 대표자들은 기회특구 조세지원이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IRR)을 2~4%p 높이는 등 다른 잠재적인 투자 기회와 비교할 때 투자매력이 높다고 응답함.
- 미국 의회에서는 저소득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 등과 같은 정책도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의 연장 등을 통해 영구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부정적 효과)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가 일자리 창출, 저렴한 주택 공급 등 기회특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로 인한 투자가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일부지역에 집중됨.

- 투자자들이 저렴한 주택이나 지역 창업가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고급 아파트와 같은 고수익 투자에만 치중하는 등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 시 의도했던 경제 및 커뮤니티 개발 목표에 부응하지 못함.
- 회계법인 Novogradac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적격기회펀드의 전체 투자규모 중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함.
- 이로 인해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는 적격기회펀드에 세금감면 혜택만 줄뿐 실제 기회특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견해 존재

○ (개선 논의)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의 보완은 조세지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렴한 주택 공급 등 긍정적 효과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짐.

- 중위 가구 소득이 높은 지역은 기회특구 지정을 조기 일몰함으로써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는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함.
- 커뮤니티를 위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하거나 일자리 창출, 저렴한 주택 공급 규모 등 긍정적 효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함.
- 저소득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과 같은 기관에 지분투자를 장려하는 등 공익형 펀드 지원 방안을 모색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리면서도 고급 호텔, 콘도, 개인 전용기, 임대창고 등은 세금감면 대상에서 배제
- 기부금 세액공제, 연기금 투자여건 마련 등을 통해 기회특구 투자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세제 혜택에 걸맞는 보고요건, 투명성 요건(정보, 성과 등)을 강화함.

□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방향

○ '산업 육성'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세 지원

- 미국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는 저소득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 기반의 조세지원 제도
 - 이는 지역기반으로 조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문화산업 육성 등 우리나라의 특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와 다름
 -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특구는 외국인투자유치, 특정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 2022년 9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
- 최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지원 방안이 발표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 2021년 10월, 지자체·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고시된 바 있음
- (인구감소지역 국세 지원)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지원을 확대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 7.2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확대
 - (현행) 7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3년간 50% 감면 → (개선) 10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2년간 50% 감면(광역시 외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8.12.)
 - (창업기업 등)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
 -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 우리나라의 지역 기반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것이며, 지방에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하지 않음.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등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에 조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음.
 - 예를 들어, 수도권에 소재한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 지역인 원주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음.
 -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인 소재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도 조세지원을 받지 못함.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신규투자도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원수준 등에서는 차별화할 수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신규투자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는 다름.
 -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 보전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신규투자는 이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를 차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
 - 미국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는 기회특구 내에서 투자대상(법으로 정한 투자금지 사항 외) 등에 대한 제한없이 조세 지원
 - 우리나라의 경제 특구는 지원정책의 목적별로 해당 기업 및 사업에 대한 범주(업종,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를 한정
 - 예시 1.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첨단기술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관광/문화/첨단 기술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수출제조업/물류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문화/관광 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보건의료기술산업) 등
 - 예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지특법」 제75조2)

○ 사람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조세지원

- 기존 특구는 기업 중심의 조세지원
 - 산업단지의 조세지원 대상은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 인구감소지역의 국세와 지방세 지원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표 5> 우리나라 지방이전 기업과 미국 기회특구 조세지원 비교

구분	지방이전 기업	기회특구
목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기업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낙후지역 및 저소득지역인 기회특구에 민간자본을 유도
수혜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	적격기회펀드 투자자 (개인, 법인 모두 가능)
수혜내용 (국세)	① 본사·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② 본사·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① 적격기회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5% 감면 ② 적격기회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법인인 반면, 미국의 기회특구는 저소득지역인 기회특구에 민간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법인과 개인은 조세지원수단(지원세목, 지원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조세지원 방안을 설계하여야 함.
- 인구이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전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
 -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참조하여 설계 가능
 -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청년의 경우 90%)

○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의 시장 친화적 조세지원

- 민간부문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지역 및 투자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에도 조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민간 주도의 투자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수익률이 그 외 지역의 투자수익률과 견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인센티브 부여
 - 미국 적격기회펀드 대표자들은 기회특구 조세지원이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IRR)을 2~4%p 높이는 등 다른 잠재적인 투자 기회와 비교할 때 투자매력이 높다고 응답
 - 조세지원이 투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다른 잠재적인 투자기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춘 투자로 만들 수 있음

○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위한 파격적 조세지원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세제혜택을 시도하고, 이러한 세제 혜택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장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혜택 부여 검토
 - 수혜내용(국세) : ① 본사·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7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 세액감면(지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 ② 본사·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승계 시 상·증세 한도 상향, 사전·사후승계요건 완화 검토
 -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토 론 문

고향세와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한 실무적 검토

| 김홍환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① 연구에 대한 이해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설명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인지, 기부동기·의사·금액 조사, 선호답례품, 기부금 활용용도, 제도보완·개선 사항 등 설문
 -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기부금 모집과열경쟁 방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확대, 기부 대상(자신의 기업) 및 주체(기업) 확대, 세액공제 및 기부상한선 확대, 지역특성 맞는 답례품, 지역균형발전 연계 기부 등 제시

② 일본과의 제도 비교에 대한 추가 논의

-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가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은 자신의 소득세 납부액의 약 20%까지 전액 공제되므로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
 - 한국은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전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부금과 동일하게 16.5%(5+1.5)가 공제됨.
 - 이에 일본과 같이 기부금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 함.
-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중앙-광역-기초가 나누어 갖는데 기초의 비중이 크므로 기부금은 지방-지방 간 세원 이전 성격임.
 - 한국은 정치자금 특례와 같이 10만원까지는 국세 소득세 약91,000원, 지방소득세 약 9,000원이 공제되므로 중앙-지방간 세원 이전 제도임.
- 2008년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지방 간 세원이전 방식(주민세 소득할)을 지지하였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해당 제도를 반대함.
 -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안)은 수도권 자치단체에 역차별 논란이 발행하면서 선거 공약에서 제외됨.

③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및 모집주체 상향에 관한 의견

-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음.
 -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1951년 제정 당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임.
 -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6·25사변으로 국토의 태반이 전화를 입고 국가의 재정이 곤란하게 된 현재, 시국대책 또는 멸공구국운동등의 미명하에 그동안 억제중에 있던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각종세금의 증액, 국채소화의 강행, 인플레이등으로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라고 하고 있어 강제기부 때문임.
- 1996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신설된 규정은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임.

-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기부금품모집허가 대상을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및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축소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국가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왔으며,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기부자의 제한 등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4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세 운영원칙에 위배된 제도

-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양하게 제시됨.
 - ① 고향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 ② 응징원칙에 근거한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 ③ 기존의 세목과 다른 특성을 가진 세목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 ④ 지방재정의 확보를 통한 지방정부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수평적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님.
-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도 해소되지 못함.

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 세원 이전의 효과 비교 필요

- 고향기부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재원은 결국 중앙정부 소득세인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함.
- 만약 재정이전 효과가 1조원이라면 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통해 1조원을 이전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경쟁을 통해 1조원을 이전할 경우를 비교하면,

- ①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재원이 이전되는가? 아님.
- ② 재원이전에 있어 누수효과(거래비용)는 없는가? 매우 큼(답례품 30%, 관련 행정비용 발생)
- ③ 정치적 비용은 없는가? 매우 큼(지역간 기부금 규모 비교, 답례품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기금사업 선정의 문제 등)

6 답례품 선정방식에 따른 답례품 경쟁구조 : 지역성 반영 난망

- 고향사랑기부 방법으로서 플랫폼(고향e음)을 통해 볼 때 쇼핑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답례품을 고르는 방식임.
- 즉,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답례품보다 답례품의 충실성에 기반한 매력이 기부지역을 선택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됨.
- 일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홍보 외에 기부금 확대 요인으로서 답례품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됨.

〈 고향납세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활동의 종류	단체 수(%)	2015년도 응답
인터넷의 활용, 팸플렛 작성 등 홍보 시책	1,454(81.3%)	1,390
답례품의 내실화, PR	1,283(71.8%)	1,108
편의점을 통한 납세 및 신용카드 납세 등 납세방법의 다양화	936(52.3%)	752
과거 고향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요청 혹은 동문회·현민회 등을 대상으로 요청	776(43.4%)	697
고향납세기부금 사용처의 명확화 및 사업의 내실화	628(35.1%)	481
각종 이벤트를 통한 PR, 요청	562(31.4%)	428

주: 고향납세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전국의 1,78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단체 수 중 해당 원인을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숫자 비율이며, 중복응답을 허용함.

자료: 총무성(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 2016년 고시자료.

7 자치구 세액공제 문제

- 세정 측면의 문제로서 자치구의 세액공제 문제가 있음.
- 소득세는 국세의 지방 이전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지방이전인데, 문제는 개인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세라는 점임.
- 군의 주민이 자치구에 기부할 경우 군의 지방소득세가 기부된 자치구로 이전될 수 있으나, 자치구의 주민이 군 지역에 기부할 경우 자치구는 지방소득세가 없으므로 타 재원(조정교부금 또는 등록면허세·재산세)으로 해당 기부금분을 이전시켜야 함.
- 당초 목적이 소득세의 이전인데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 최근 자료 기준 기부금 규모 추정 〉

〈 시나리오 구성 〉

모집단 정의	기부의사비율	제도인자율	평균기부액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세자	기부의사비율	적극인지	①여론조사 기초
			②실증자료 기초
		소극인지	③여론조사 기초
			④실증자료 기초
기부경험자	기부의사비율	적극인지	⑤여론조사 기초
			⑥실증자료 기초
		소극인지	⑦여론조사 기초
			⑧실증자료 기초

〈 고향사랑기부금액 추정 결과 〉

모집단	기부의사 비율	제도 인지율	평균 기부액	기부금 규모 (억원)
소득세 10만원이상 납세자 17,174,777명	53.1%	적극인지 10.0%	129,746원	1,183
			88,011원	803
		소극인지 26.7%	129,746원	3,159
			88,011원	2,143
기부경험자 15,273,748명	53.1%	적극인지 10.0%	129,746원	1,052
			88,011원	714
		소극인지 26.7%	129,746원	2,810
			88,011원	1,906

- 주 1. 기부의사자 비율 : 최근 3개 여론조사 결과 평균 기부의사비율
2. 제도인지율 : 최근 4개 여론조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인지율(적극 : 잘 앎+앎, 소극 : 약간 앎)
3. 평균기부액 : 최근 3개 여론조사 결과 가중평균의 평균(129,746원), 정치자금 기부금(88,011원)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

① 발제에 대한 이해

- 국정과제로서 제시된 ‘지역균형발전’,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인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정 및 운‘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 발제문은 정책방향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방향을 제언함.
 - 기업이전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안
 -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조세지원으로서 거주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근로소득세 감면 제안
 -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 조세지원 제안

②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충분성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소득뿐 아니라 양도차익까지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 (양도차익)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소득세) 제63조 제1항 제2호 :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 위기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낙후 지역 종류〉

구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지역	- 일반농산어촌 중에서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3개 섬지역 * 균형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 성장촉진 지역이 아닌 섬개발 대상 섬 - 접경지역	-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 지역 (123개 시·군) *세종시, 제주도 행정시의 읍·면포함	특별·광역시 군·구 및 일반시(143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 전체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율	100%	80%	70%	50%
대상사업	-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지역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 성장촉진지역: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 지원			
관련 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섬 개발 촉진법 등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1, p.161. 일부 수정; 하예영·김예성, 2021, 29p 재인용함.

- 현행 수도권에서 그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함.

〈표 III-11〉 지방 이전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업 수	543	563	608	568	534
세액감면액	19,418	28,588	25,836	24,181	25,282

자료: 국세통계포털(TASIS), 국세통계(3-2-9) 각 연도

- 전국사업체 수 또는 중소기업 수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 기업만이 수도권에서 그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

(단위:명, 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사업체	개수(A)	1,964,217	823,624	206,244	934,349	2,212,332	4,176,549
	종사자(B)	11,622,231	5,226,997	1,092,494	5,302,740	11,101,041	22,723,272
	평균 종사자 (C=B/A)	5.9	6.3	5.3	5.7	5.0	5.4
중소기업	개수(D)	3,533,662	1,474,464	353,767	1,705,431	3,354,773	6,888,435
	종사자(E)	9,405,912	4,159,042	874,501	4,372,369	8033683	17,439,595
	평균 종사자 (F=E/D)	2.7	2.8	2.5	2.6	2.4	2.5

자료: 전국사업체 수(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5.18.)
중소기업 수(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2021.11.11.)

-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및 각종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분산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③ 근로소득세 감면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있고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기준을 ‘실 수령액’에 초점을 둠.
-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더라도 기업은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세 감면이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
- 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효과가 있다면 중소기업 인력 채용이 보다 쉬어졌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 효과로서는 의문이 됨.

④ 신규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 제85조의3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유사사례로서,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있음.

토 론 문

고향세와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한 실무적 검토

| 김현아 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총론) 고향사랑기부제는 균형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제도개요) (세금+답례품) 소득세 세액공제 유인을 통하여 개인이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기부하고 일정금액만큼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우리농수산물 관련 판매처, 자치단체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지역 특산품 판로, 해당지역 문화관광 부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인구추계와 인구이동통계 기준, 노령화 및 인구소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세수감소만 분명한 반면, 균형발전, 기부문화 확산과의 연계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소득세 감소는 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모수인 내국세 감소를 의미하므로 지자체 입장에서 ‘조삼모사’ 형국에 해당함.

- 이 제도 도입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부세는 다소 감소하고, 답례품 개발 관련 예산소요, 민원발생함.
- 소멸예상지역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음
- 수도권 지역의 거주민들이 대부분 이용대상이라고 본다면, 수도권 지역 주민의 세액감소만 발생할 뿐 지역소멸지역의 균형발전 재원에는 부작용 발생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농수산물 소비 절대규모 증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VS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 지역소멸 완화 효과는 미지수)

- 1) (수정)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현재 2022년 기준 국세 지방세 비중은 75:25 임
- 2) 본 제도는 세수감소효과는 분명한 반면, 이로 인한 농수산물 판로개척, 답례품 개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귀농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이는 기존 소비자들의 농수산물 소비를 증가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해당 지역 답례품만큼 기존에 구입하던 농수산물은 감소(한계소비성향 1보다 작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다른 농수산물 부분 감소분을 상쇄하여 감안하여야 함
- 3)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10만원 기부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문화 확산은 사회전반적 의식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세액공제에 따른 재정감소분 국고지원은 소득세액 공제 정도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원론적으로 추가적인 국고지원 근거 미비
 - 지자체 스스로 사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부분확대를 통한 지자체 유인활성화가 관건이며 핵심임

〈참고자료: 중앙 지방 재정규모 현황〉

- 지방재정 현황 기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순계예산) 규모 288.3조원, 증가율 9.6%p, 지방세 108조원 규모
- 지방소비세입 여건 개선으로 인한 세수규모 증가,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 소비세로 이양
- 양적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경제성장률,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율(2022년 5.2%, 행안부 증가율 13% 대 증가율)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

[그림 70]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 앙 정 부	3,031,432	3,308,414	3,617,859	3,862,379	4,174,201	4,558,366
(비중)	(54.6)	(54.4)	(54.5)	(54.1)	(55.5)	(55.1)
자 치 단 체	1,931,532	2,106,784	2,310,152	2,532,263	2,630,917	2,883,083
(비중)	(34.8)	(34.7)	(34.8)	(35.5)	(35.0)	(34.9)
지 방 교 육	590,660	662,216	705,960	739,013	718,605	826,902
(비중)	(10.6)	(10.9)	(10.7)	(10.4)	(9.5)	(10.0)

[그림 71] 중앙 대 지방 총 재정사용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 앙 정 부	1,691,075	1,812,512	1,913,463	2,163,914	2,413,619	2,508,270
(비중)	(40.0)	(39.5)	(38.5)	(40.7)	(42.8)	(40.8)
자 치 단 체	1,907,660	2,080,476	2,306,449	2,396,034	2,484,016	2,765,951
(비중)	(45.1)	(45.4)	(46.4)	(45.0)	(44.0)	(45.0)
지 방 교 육	629,893	693,822	754,402	761,310	745,751	877,002
(비중)	(14.9)	(15.1)	(15.1)	(14.3)	(13.2)	(14.3)

자료: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p.24

□ 인구전망에 따르면 절대 인구규모 감소하는 추세이고, 자본집적도가 높은 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 대상 구분 필요

○ (일반재원 및 사업재원 동시에 인상)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전 우선(지방교부세, 국세 지방세 이양 등)하면서, 동시에 낙후지역 지원 국고보조율 인상, 차등보조율 적용 등 사업지원을 증가시키는 방식

☞ 매정부마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은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

○ 참고로 OECD 국가들 비교시 우리나라의 이전재원 규모 비교적 높은 편임

[그림 72] 연도별 세입재원별 순계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2019년	전년 대비	2020년	전년 대비	2021년	전년 대비	2022년	전년 대비
계	1,931,532	2,106,784	9.1	2,310,152	9.7	2,532,263	9.6	2,630,917	3.9	2,883,083	9.6
	2,279,676	2,431,210	6.6	2,720,533	11.9	3,061,095	12.5	3,275,869	7.0	-	-
자 체 수 입	935,253	1,006,057	7.6	1,044,104	3.8	1,150,043	10.1	1,167,479	1.5	1,328,144	13.8
	1,008,350	1,060,003	5.1	1,115,164	5.2	1,242,290	11.4	1,339,466	7.8	-	-
지 방 세	711,891	779,140	9.4	818,267	5.0	909,501	11.1	926,047	1.8	1,085,070	17.2
	750,239	799,525	6.6	855,359	7.0	921,924	7.8	1,022,963	11.0	-	-
세 외 수 입	223,362	226,917	1.6	225,837	Δ0.5	240,541	6.5	241,433	0.4	243,075	0.7
	258,111	260,477	0.9	259,804	Δ0.3	320,367	23.3	316,533	Δ1.3	-	-
이 전 수 입	778,057	858,760	10.4	982,652	14.4	1,101,193	12.1	1,187,213	7.8	1,317,281	11.0
	901,666	977,629	8.4	1,169,021	19.6	1,325,996	13.4	1,425,839	7.5	-	-
지방교부세	337,384	378,699	12.2	432,954	14.3	493,705	14.0	492,632	Δ0.2	584,825	18.7
	433,792	478,986	10.4	561,809	17.3	501,232	Δ10.8	584,137	16.5	-	-
보 조 금	440,673	480,061	8.9	549,698	14.5	607,488	10.5	694,581	14.3	732,456	5.5
	467,874	498,643	6.6	607,212	21.8	824,763	35.8	841,702	2.1	-	-
지 방 채	22,757	19,905	Δ12.5	37,287	87.3	55,605	49.1	65,442	17.7	40,343	Δ38.4
	24,176	20,631	Δ14.7	40,316	95.4	68,026	68.7	65,332	Δ4.0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95,465	222,062	13.6	246,108	10.8	225,423	Δ8.4	210,783	Δ6.5	197,315	Δ6.4
	345,484	372,948	7.9	396,032	6.2	424,783	7.3	445,201	4.8	-	-

주) 상단은 당초예산, 하단은 최종예산

자료: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p.31

□ 한편, 절대적인 재정규모 이전보다는 지역간 형평화 확대가 문제라는 인식

○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도시와 낙후지역 간 격차 심화가 문제점으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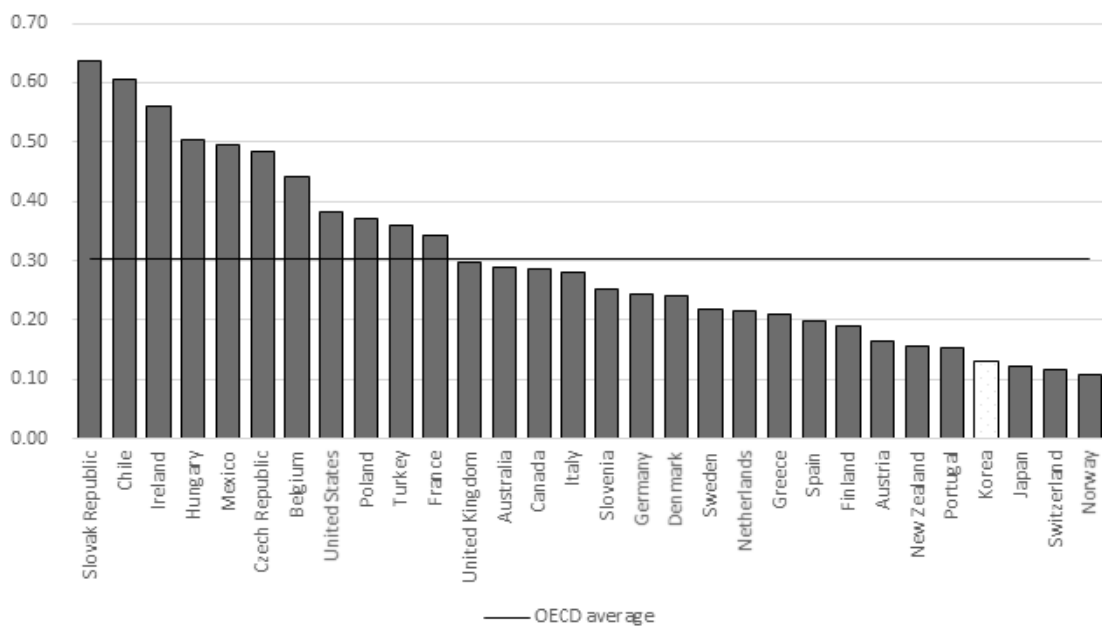
그러나 이 역시 OECD 국가들의 GRDP 형평화 지수 비교시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역간 격차 낮은 편

단, 비교단위'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일 경우의 격차일 경우는 다른 해석 가능

- 대부분 시장 지표에 의한 격차심화 추이가 문제이며, 이를 '재정투자'로 극복하는 것은 역부족, 향후 재정투자 방향과 분야 선정 신중 필요

[그림 2-73] OECD 주요국의 1인당 GRDP 변동계수



주: 2020년 기준. 단, Japan은 2018년, Norway와 Switzerland는 2019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방향

□ 특구지정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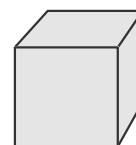
-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구 지정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해왔던 정책이므로 새정부 이후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특구개발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음

□ 기존 특구와의 차별화 및 기존 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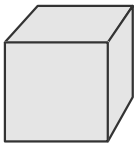
-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으로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존 특구 역시 기업이전을 독려하고자 한 것으로, 사실상 다르지 않음
- 대상지역, 투자업종, 지정절차 등 기존 계획과 유사함
- 핵심은 ‘기업 지방이전 이후 인력수급과 정주여건 등의 기업운영제반사항의 수도권과 격차가 기존 특구보다 월등히 나은가’가 관건임
- 그러나 이는 이주의사가 있는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특례는 한도 이상으로 받고 있는 바, ‘소비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금의 이 상황은 절대적인 인구감소, 노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규제완화, 세제특례 등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 ‘교육여건’, ‘병원시설’, ‘주택가격 인상’ 등의 수도권 메리트에 해당하는 ‘시장요인’을 정부 정책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온 바 기존 특구와의 조정역할, 차별화 방향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음
- 그 때 정책수단 중 ‘조세지원’은 기업이전 의사결정의 한 요인일 뿐 절대적이 요인은 아님. 이는 설령 조세지원규모가 파격적이라 할지라도 비수도권으로 이주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함
- 기존 특구에서도 조특법 관련 조세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지는 분석을 통하여 살펴봐야 함

□ 현재 진행되는 인구소멸 양상과 이에 따른 이민자 유입 등 전반적으로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병행하여 특구지정의 차별화와 내실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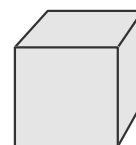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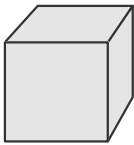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29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 쇄 일 2023년 2월 15일

발 행 일 2023년 2월 16일

발 행 인 원 경 희

발 행 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